

나.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및 계약농가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2항	30	60	120
2)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0	120	240
3)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	300	600
4)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300	600

축산법 시행령

[시행 2013.2.23] [대통령령 제24388호, 2013.2.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1359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세히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안 제14조 및 안 별표 1)

- 1)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육시설 등 시설·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위치기준 등 허가기준을 마련함.
- 2) 축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사육시설 및 방역·위생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축사육업 등록의 대상 및 기준(안 제14조의2

» 축산법령

및 제14조의3 신설, 안 별표 1)

- 1) 기존에 소·돼지·닭·오리 등 4개 축종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여하던 것에서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의 경우에도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등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정함.
- 2)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축산업자,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15조, 안 제17조의2 신설, 안 별표 2 및 안 별표 3, 안 별표 4 신설)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산업자,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4388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돼지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 양계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오리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말한다.

1. 종축업

-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 제목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의3(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 축산법령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식용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 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법 제51조제4항”을 “법 제5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51조제5항”을 “법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장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4.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제27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3.2.20)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1. 축산업의 허가기준
 -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 1) 종축업
 - 가) 종돈업(생략)
 - 나) 종계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계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 사육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계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1) 종계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2) 종계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계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 축산법령

다)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종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사육 시설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오리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1) 종오리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2) 종오리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오리의 관리(백신 접종,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2)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종계육종회사·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 시설	가)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함)를 설치할 것 (1)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2)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부화업을 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다)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라)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가) 부화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나) 부화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기타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서 정한 부화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나)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함) 대장을 갖출 것

- 3) 정액등처리업(생략)
- 4) 가축사육업
 - 가) 소(한우, 육우, 젃소) 사육업(생략)
 - 나) 돼지 사육업(생략)
 - 다) 닭(산란계, 육계) · 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1)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집란실은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산란계만 해당함) (4)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산란계만 해당함)
소독시설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함)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2)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함)를 설치할 것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 1) 한우 · 육우(생략)
- 2) 젃소(생략)
- 3) 돼지(생략)
- 4) 닭
 -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cage)	0.05m ² /마리	
	평사	0.11m ² /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² /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kg/m ²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m ²
		자연환기	33kg/m ²
	케이지		0.046m ² /마리

» 축산법령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 (2)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산란계 · 종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마리	
육용 오리	0.246㎡/마리	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마리 적용

비고

고상식 시설 :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다. 위치기준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 구기관을 말함
-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3.2.20)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제15조제3항 관련)

1.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1)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2) 가축사육업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허가취소		
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5호	허가취소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7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아.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8호	허가취소		

» 축산법령

2.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등록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등록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	등록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5호	등록취소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3.2.20>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제17조의2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의4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4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6호	등록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7호	등록취소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4] <신설 2013.2.2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50	200	300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10	50	200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	50	20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	50	200
마.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0	100	200
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6호	50	200	300
사.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7호	50	200	300
아.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8호	100	250	500
자.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6조제1항제9호	50	100	300
차.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0호	20	50	100
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1호	50	100	300
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2호	100	200	300
파. 법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3호	100	250	500
하.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4호	10	50	200